

# 장지연(張志淵)의 『황례편(皇禮篇)』을 통해 본 대한제국기 황제례의 의미

정현정\*

## 〈차 례〉

1. 머리말
2. 대한제국 선포와 황제국 의례의 정비
3. 『황례편(皇禮篇)』에 나타난 교배(郊配)와 추존(追尊)의 의미
4. 맺음말

## [국문초록]

장지연은 대한제국 선포에 앞서 고종이 황제의 지위에 오를 것을 요청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국가전례 정비 기구인 사례소의 일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사례소가 폐지된 뒤 황제국 의례인 『대한예전』 편찬 작업을 완료하여 고종에게 올렸다. 대한제국 수립 후 3년째인 1899년, 장지연은 환구단 제사에 조상을 함께 배향하는 ‘교배(郊配)’와 선대 왕의 존호를 높이는 ‘추존(追尊)’이 행해지지 않음을 들어 황제국으로서의 의례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황례편』 제1과 『황례편』 제2를 작성한다.

『황례편』 제1에서 장지연은 교제사에 조상을 배향하는 것에 담긴 ‘보본반시’의 의미를 확인한다. 즉 제왕이 하늘에 제사하고 더불어 조상을 배향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반추와 성찰의 극치로서, 유가의 이념이 반영된 제천 의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장지연은 황제의 조상에 대한 배향이 누락된 대한제국의 환구제에 문제제기하며, 제왕이 존재의 근원, 그리고 인간적 가치의 근원에 대한 반추와 성찰을 통해 자신이 만물과 인간이 성립하고 번영해 온 역사의 끝에 존재하고 있고, 조상들이 책임져 온 일을 온전히 계승해야 할 임무가 있음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황례편』 제2에서 장지연은 주나라의 무왕을 비롯하여 역대의 제왕들이 천자의 자리에 오른 즉시 조상의 칭호를 추송하였음을 밝히며 대한제국 선포 이후 3년째가 될 때까지 고종이 선대 왕들을 황제로 추존하는 예를 거행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다. 제왕의 호는 조상의 이름을 높여 부르고 그에 걸맞게 대우함으로써 자신만을 지고의 위치에 두지 않는 것이다. 이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것이 추존이라는 예에 담긴 유가적 이념이다. 장지연은 ‘천자7묘’의 묘제에 의거하여 태조와 고종의 4대조, 그리고 이조(二祧)를 황제로 추존할 것을 제안한다.

황제국 의례 제정의 맥락에서 장지연에게 대한제국은 유가적 제왕의 나라였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국가전례는 바로 천자국 예제의 수준과 규모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장지연은 대한제국이 황제국 의례를 통해 삼대 성왕의 통치를 계승하고 유가 이념을 온전히 담지한 천자국으로 올라서기를 갈망한 것이다.

[주제어] 대한제국, 『대한예전(大韓禮典)』, 『황례편(皇禮篇)』, 환구제, 천자7묘

## 1. 머리말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은 구한말과 일제시기의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에게는 사학자, 유학자, 실학자, 지식인, 개화론자, 애국계몽운동가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르기도 한다. 이는 장지연이 격동기 조선에서 매우 적극적, 역동적으로 활동하였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그의 생애는 대체로 35, 36세까지 전통적인 유학자로서의 활동기, 42세까지 언론인 및 개화사상가로서의 활동기, 47세까지의 국권회복운동기, 48세 이후 망국의 울분으로 고뇌하면서도 민족문화 연구와 저술에 몰두한 시기 등으로 구분된다.<sup>1)</sup> 이로부터 장지연이 열강의 침략과 전통적 질서의 붕괴라는 현실 및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장지연의 생애가 이렇듯 다채로운 면모를 보이지만, 그 사상의 기반, 지식 체계의 기초는 바로 ‘유학’이다.<sup>2)</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학통을 계승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이 장지연의 12대조이고 장현광의 8대손인 사미헌(四未軒) 장복추(張福樞, 1815~1900)가 그의 족조(族祖)이다. 장지연은 장현광의 9대손인 오하(梧下) 장석봉(張錫鳳, 1820~1882)의 문하에서 14세부터 19세까지 공부하였고, 19

1) 윤남한, 「장지연의 생애와 사상」,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50~52쪽; 유승, 「장지연의 생애와 자강사상」,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136~147쪽.

2) 천관우, 「장지연과 그 사상」,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25쪽; 윤남한, 「장지연의 생애와 사상」,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48쪽; 구자혁, 「장지연의 자강사상」,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69쪽.

세 때부터 방산(舫山) 허훈(許薰, 1836~1907)에게 수학하였다. 허훈은 계당(溪堂) 유주목(柳疇睦, 1813~1872)을 통해 영남의 퇴계학과 접하고 성재(性齋) 허전(許傳, 1797~1886)을 통해 근기의 성호학을 전수받아 이황-정구-허목-이익-안정복-황덕길로 이어지는 근기남인 학맥에 자신의 학문 계보를 둔 학자로서, 장지연은 허훈을 통해 정통 주자학뿐만 아니라 근기남인의 실학에도 접할 수 있었다. 1890년부터 장지연은 한양에서 지내며 과거시험에 응시하였고 1894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는데, 이 직후 동학운동, 청일전쟁, 갑오경장 등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는 상소운동의 방식으로 시세에 참여하였다.<sup>3)</sup>

전통적 유학자로서 장지연의 활동은 대한제국 성립 직후인 1898년경까지 지속되다가 1898~1899년 <황성신문>, <시사총보> 등 언론에 몸담은 35~36세 이후부터 계몽사상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sup>4)</sup> 이 때에 장지연이 추구한 것은 유교적 강상(綱常)은 유지하면서 예악, 형정, 전장, 법도 등은 때에 따라 바꾸는 개혁, 즉 유교적 변법론의 입장에서 근대적 변혁이었다.<sup>5)</sup> 이는 이후 국권 상실에 대한 위기의식에 따라 실력양성을 추구하는 자강(自強) 사상으로 전개되는데, 자강의 사상적 본질은 『주역』의 ‘자강불식’에서 유래하는 주체성이다.<sup>6)</sup> 또 장지연은 청말 강유위, 양계초 등의 대동(大同) 사상에 영향을 받아 대동의 이상을 구현하는 유교개혁을 주창하기도 하였다.<sup>7)</sup>

장지연의 삶과 사상이 유학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에 호응하며 부단히 변모하였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전환점은 ‘전통적인 유학자’에서 ‘개화 사상가’로 전향해가는 그의 30대 중반 무렵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장지연의 지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구자혁은 1897년 장

3) 임종진, 「위암 장지연의 유교관에 대한 검토-퇴계학맥의 근대적 변용에 관한 일고찰」, 『철학연구』 91, 대한철학회, 2004, 261~262쪽; 노관범, 「청년기 장지연의 학문 배경과 박학풍」,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234~255쪽.

4) 윤남한, 「장지연의 생애와 사상」,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49~50쪽.

5) 김도형, 「장지연의 변법론과 그 변화」,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2000, 85~91쪽.

6) 노관범, 「대한제국기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4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151쪽.

7) 임종진, 「위암 장지연의 유교관에 대한 검토-퇴계학맥의 근대적 변용에 관한 일고찰」, 『철학연구』 91, 대한철학회, 2004, 275쪽.

지연이 유교의 정통과 개화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sup>8)</sup> 한편 김도형은 변법론으로의 사상적 변화가 1897년경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힘으로써,<sup>9)</sup> 그리고 노관범은 ‘자강’이 대한제국 선포 이래의 시대적 가치였음을 밝힘으로써<sup>10)</sup> 이 시기 장지연에게서 1900년대 초 국권 상실을 전후하여 구체화된 자강사상의 단초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컨대 1897~1899년, 즉 장지연의 34~36세에 걸친 사상적 전환기는 단순히 복합적인 과도기, 혹은 장년기 사상과 활동에 대한 맹아기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점이 제기된다. ‘개화 지식인’으로 탈바꿈하는 초기가 아니라, ‘전통적인 유학자’로서 성숙한 시점의 측면에서 장지연의 문제의식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대한제국의 성립기라는 점, 그리고 장지연이 이 시기에 고종의 황제 즉위를 강력히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관직에 임명되어 대한제국의 전례를 정비하는 데 깊이 관여하였고, 황제국 의례에 관한 수 편의 저술을 남겼다는 점에 주목을 해본다면, 장지연 생애의 큰 변곡점에서 그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고종의 황제 즉위 및 제후국 조선의 황제국으로서의 재정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897년부터 1899년 사이 고종의 황제 즉위 및 대한제국 선포와 관련한 장지연의 활동, 그리고 황제국 의례에 대한 장지연의 구상과 견해가 담긴 『황례편(皇禮篇)』 등의 저술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유가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문제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질서의 수호와 서구적 근대화 각각에 대한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시기, 장지연의 유학자적 정체성과 지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 구자혁, 「장지연의 자강사상」,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74~75쪽.

9) 김도형, 「장지연의 변법론과 그 변화」,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2000, 84쪽.

10) 노관범, 「대한제국기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4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150쪽.

## 2. 대한제국 선포와 황제국 의례의 정비

1897년 10월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은 자주독립국임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조선에서 군주를 황제라 칭하는 이른바 ‘칭제(稱帝)’에 대한 논의는 이미 갑신정변(1884) 때 김옥균 등의 개화파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들은 조선의 국왕을 청의 황제와 동등한 지위로 격상시킴으로써 자주독립의 상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그 시도는 좌절된다. 이후 칭제 문제는 을미사변(1895) 직후 왕비 시해의 만행을 호도하고 청으로부터 조선을 자주독립시켰다고 선전하려는 일본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으나 러시아, 미국, 프랑스 측의 반대와 고종의 거부로 실현되지 않았다. 을미사변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1896) 시기,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홍종우에 의해 칭제 건은 다시 등장하는데, 이 때의 국가 모델은 프랑스 제정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본, 청, 러시아의 간섭이 번갈아 작용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것이 실현되기는 어려웠다.<sup>11)</sup>

을미사변을 경험한 고종 역시 반일자주독립을 위해 칭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고, 측근 신하들과 재야 유생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다. 이에 1897년 2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이후 친일 관료가 축출되고 각국의 영향력이 잦아든 것을 계기로 칭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칭제 논의는 고종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각계에서 칭제요청 상소가 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897년 5월과 9월에 재야 유생, 중앙과 지방 관료, 조정 대신들의 상소가 집중적으로 올라왔는데, 그 대체적인 요지는 조선이 삼대(三代)에서 한, 당, 송, 명에 이르는 중화문화의 정통을 계승했고, 칭제가 당시 국제질서에도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고종은 표면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론이 무르익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10월 3일 칭제를 수락하게 된다.<sup>12)</sup>

11) 이민원, 「대한제국의 탄생 과정과 위암 장지연-칭제건원 논쟁을 중심으로」, 『문명연지』 20, 한국문명학회, 2019, 144~146쪽.

그런데 사실 대한제국의 수립과 황제 등극을 준비하는 작업은 고종의 칭제 수락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1897년 6월 고종은 사례소(史禮所)를 설치함으로써 황제국 위상에 합당한 국가전례를 정비하고자 하였고, 8월에는 갑오경장 때 제정된 연호인 ‘건양(建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였다. 9월에는 환구단(圓丘壇) 정비를 결정하여 10월 1일 새로운 환구단의 터를 회현방 소공동으로 정하고 곧바로 착공하였다. 10월 3일 고종이 칭제를 운허한 이후로는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0월 4일 황제 즉위에 필요한 문서를 제작할 보책조성소(寶冊造成所)를 설치하였고, 10월 7일 경운궁 정전인 즉조당(卽祔堂)의 이름을 태극전(太極殿)으로 바꾸었으며, 10월 9일 사직단의 위패를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바꾸어 위상을 승격시켰고, 10월 11일 고종은 태자와 환구단에 가서 고유제에 쓸 희생과 제기를 시찰한 뒤 새로운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했다. 10월 12일에는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고종은 환구단에 나아가 천지에 고유제를 지내고, 태극전으로 돌아와 황후와 황태자를 책봉하였다. 10월 13일에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연호를 ‘광무’로 하고 황후와 황태자를 책봉함을 내외에 선포하는 조칙을 내렸다.<sup>12)</sup>

고종의 황제 등극의 관련 행사는 환구단에서의 고유제와 태극전에서의 조칙 반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구단 고유제는 『대명회전(大明會典)』의 환구단 제례와 황제 등극의를 원용한 것이었다.<sup>14)</sup> 말하자면 황제 즉위와 황제국 선포는 자주독립국가 천명의 함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구단에서의 고유제 및 황제 칭호, 연호 사용 등에 관한 조칙 반포 중심으로 등극의를 거행한 것은 명의 정통을 이어 황제국의 독점적 의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자주독립을 상징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2) 한영우, 「대한제국 성립과정과 『대례의궤』」,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1, 197~221쪽.

13) 한영우, 「대한제국 성립과정과 『대례의궤』」,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1, 205~229쪽.

14) 김문식, 「고종의 황제 등극의에 나타난 상징적 함의」, 『조선시대사학보』 37, 조선시대사학회, 2006, 86쪽.

이러한 방식의 황제 즉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최익현, 유인석 등 위정척사계열의 유생들은 소중화(小中華)의 나라에서 서양을 따라 황제를 칭하는 것은 짐승의 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윤치호와 같은 서구 지향적 지식인은 황제 즉위가 서구 열강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치이므로 그러한 행사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국정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자주독립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겼다.<sup>15)</sup>

이육은 현재 소공동길 롯데호텔 옆 팔각지붕의 3층 건물, 즉 일제에 의해 환구단이 헐리고 남은 부속 건물인 황궁우(皇穹宇)를 보며 질문을 던진다. 근대화에 여념이 없어야 할 시점에 하늘에 대한 제사가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가? 개항 이후 열강의 위협 속에서 황제 등극이 절실한 것이었는가? 실로 환구단에서 개항 이후의 과제였던 경장, 개혁의 이념이나 민족국가, 근대시민국가 이념과의 연속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황제위에 오르고 싶은 개인적 욕망의 표출 혹은 보수반동의 정치적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는 것이다.<sup>16)</sup>

과연 자주독립과 개혁이라는 시대의 절박한 요청에 대하여 황제 즉위와 황제국 선포, 황제례 거행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대응인가? 그도 아니라면 모종의 자체적 논리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장지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상소로써 고종의 황제 등극을 강력히 촉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고, 사례소 설치 이후 전임 직원으로 임명되어 국가전례 정비에 몸담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례소는 설치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인 1898년 10월, 황제국 의례 편찬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 문제로 폐지된다. 이에 장지연은 미완의 작업, 즉 『대한예전(大韓禮典)』을 완료하여 이 해 연말에 고종에게 올린다. 이 무렵 최익현은 대한제국이 황제국을 자칭하면서 단지 서양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는데, 이에 대해 장지연은 「변찬정

15) 한영우, 「대한제국 성립과정과 『대례의궤』」,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1, 203~204쪽; 이민원, 「대한제국의 탄생 과정과 위암 장지연-칭제건원 논쟁을 중심으로」, 『문명연지』 20, 한국문화학회, 2019, 155쪽.

16) 이육, 「대한제국기 환구제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30, 한국종교학회, 2003, 182쪽.

최익현논황례소(辨贊政崔益鉉論皇禮疏)」에서 고종이 황제위에 오른 것은 명(明)의 정통을 계승한 것임을 역설하며 반박한다.<sup>17)</sup>

그런데 장지연은 이듬해인 1899년, 황제국으로서의 의례가 미비함을 지적하는 「의진황례편소(擬進皇禮篇疏)」를 작성한다.

신은 본래 영남의 한미한 포의였는데, 외람되게 사례소 직원의 임무를 받아 고금의 전례를 참고하여 책을 편집한 것이 몇 달이었으나 공을 이를 즈음에 폐지하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은 이미 이 일에 종사하며 황조의 전례에 대해 대략 좁은 식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시급하여 속히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일에 나아가 「황례편」을 지었습니다. … 교배(郊配)와 추존(追尊)의 전례는 황왕의 떳떳한 법이요 고금에 통하는 의리입니다. 폐하께서는 무궁한 효성으로 먼 조상에 보답하고 조종을 높이는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 두 가지 전례를 환구단에서 즉위하시던 날 거행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삼 년이 되도록 뜻은 있는데 거름은 없고, 비록 일이 중요할지라도 나라의 일이 많은 때에 갑자기 의논하기 어렵다고 하니, 어찌 성대한 조정의 전례에 흠결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례가 크게 완성되었을 때 함께 거행한다면 인정과 형식이 함께 갖추어지고 사체(事體)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그로써 우리 조종의 공렬을 빛냄이 있을 것이고 우리 폐하의 성덕 대업을 크게 드러내어 억만세에 드리울 수 있을 것입니다.<sup>18)</sup>

장지연은 ‘교배’ 즉 환구단에서의 제사에 조상을 함께 배향하는 것과 ‘추존’ 즉 선대 왕의 존호를 높이는 의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

17) 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35, 문헌과해석사, 2006, 114~126쪽.

18) 『韋庵集卷之二』, 文稿卷之三, 「擬進皇禮篇疏」(『張志淵全書』 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伏以臣本嶺土寒布, 謬忝史禮所直員之任, 參攷古今典禮, 編摩閱月, 功垂于成, 停廢之命旋降矣. 然臣既從事于茲, 於皇朝典禮, 略有管豹之見, 故就目今最大切急之不容不亟舉者數條, 論撰皇禮二篇矣. … 然而郊配之禮, 追尊之典, 卽皇王之常經, 古今之通義也, 以陛下聖孝之無窮, 於報本始尊祖宗之誠, 靡不用極, 則此兩大典禮, 宜無踰闕邱進位之日, 而迄今三載, 有志未遑, 雖曰事係重大, 有難遽議於國家多事之際, 抑豈非盛朝之欠典歟? 迨此典禮大成之日, 若并舉而兩行, 則可謂情文備至, 事體允合, 于以有光我祖宗之功烈矣, 亦所以丕顯我陛下之盛德大業, 而垂之億萬世者也.



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황제의 지위에 오르던 때에 함께 거행 되었어야 하는 일인데, 즉위한 지 3년째가 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가지 사안이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전례를 갖추는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역설하며,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논하는 글을 작성하였다고 말한다. 이것으로 보면, 장지연은 1899년 당시 고종의 황제 즉위나 황제국 의례의 정비와 시행 자체가 시의에 적합하고 실효성을 갖는지 자체에 대해 회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는 황제 의례를 더욱 완정하게 갖출 것을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사실 선대 왕의 존호를 높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1년여 전, 중추원주사(中樞院主事) 백남규(白南奎)가 상소를 올려 제안한 바 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폐하는 나라가 밝고 화평할 운수를 지니고 하늘이 내리는 명령을 받들게 되어 삼황오제의 전통을 높이 이었고 모든 백성들의 기대를 굽어 따라서 대황제위에 오른 지 오늘까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큰 전례와 큰 제도에 있어서 아직도 거행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조종을 추숭(追崇)하는 예이고, 하나는 신하에게 작위를 반포하는 제도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이 전례와 이 제도는 예로부터 왕업을 창건하고 왕통을 계승해 온 나라가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급선무로 여겼으니,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선조들의 이름 다음을 찬양하고 은혜로운 시책을 넓혀 나라의 체면을 존중하고 후대에 전해 내려 오면서 미담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서 우리나라는 당당한 제국으로서 광휘가 세상에 미치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은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까? … 조종을 추숭하는 예를 거행한 후에야 왕의 업적을 밝히고 효성을 다할 수 있으며, 작위를 봉하는 제도를 시행한 후에야 등급의 위엄을 명백히 하고 근본 원칙을 존중할 수 있게 되니, 전 세대에 부끄러운 것이 없고 여러 나라들에 광휘를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sup>19)</sup>

19) 『高宗實錄』 권37, 35년 1월 3일 양력 3번째 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즉 고종의 황제위 등극 의례가 거행되고 대한제국이 선포된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1898년 1월 3일, 백남규는 선대의 왕을 추존하는 예와 신하에게 작위를 나누어주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거행할 것을 재촉한 것이다.<sup>20)</sup> 또한 1월 30일에는 전정언(前正言) 백남도(白南道)가 상소를 올려 명 태조(太祖)의 사례를 본받아 조종을 추숭할 것을 청하였다.<sup>21)</sup> 그러나 고종은 이에 대해 모두 “그대가 청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축한다.

조종 추숭 등 황제국 의례의 미비한 부분을 갖추어 가는 것에 대한 건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1년여의 시간이 더 흐르자 장지연은 백남규, 백남도 등이 언급한바 ‘추존’의 문제와 더불어 ‘교배’의 건까지 다시 촉구하게 된 것이다. 장지연은 1899년 9월경의 『청정황의소(請定皇儀疏)』에서도 “무릇 조종을 추존하는 예는 예로부터 제왕이 마땅히 해야 하는 전례로서 종묘에 효를 다하는 바이고, 환구단을 준공하면 속히 거행해야 하는 것이 정위(正位)와 배향(配享)의 대례인데 아직도 경황이 없으니 어찌 국가 전례에 있어 흠이 아니겠습니까?”<sup>22)</sup>라고 하여 이 문제를 거듭 언급하였다.

이 사안이 『대한예전』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예전』은 조선의 국가전례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황제국 고유의 의례는 『대명집례(大明集禮)』와 『대명회전』을 주로 참고하였다.<sup>23)</sup> 박례경에 따르면 『대명집례』에 기록된 환구제(圜丘祭) 제도는 호천상제를 제사지내면서 인조(仁祖), 즉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부친인 주세진(朱世珍)을 배향하고 동쪽에 대명(大明)과 성신(星辰)을, 서쪽에 야명(夜明)과 태세(太歲)를 종사한다. 고종은 1897년 환구단에서

20) 백남규는 사례소 과원(課員)이었기 때문에, 이는 황제국 의례 연구와 정비에 매진한 사례소 직원들의 공통된 생각을 백남규가 대표하여 제안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임민혁, 「대한제국기 『대한예전』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 실학』 34, 역사실학회, 2007, 157쪽 참조.

21) 『承政院日記』 3092책(탈초본 139책), 고종 35년 1월 9일 [양력1월30일].

22) 『韋庵集卷之二』, 文稿卷之三, 『請定皇儀疏』(『張志淵全書』 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夫祖宗追尊之禮, 即自古帝王應行之典, 而所以致孝于宗廟者也, 迨圜邱竣役之日, 尤不可不亟舉者, 正位配享之大禮, 而尙此未遑, 豈非國家之欠典歟?

23) 임민혁, 「대한제국기 『대한예전』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 실학』 34, 역사실학회, 2007, 154쪽.

황제 등극의를 거행한 뒤 1899년에 태조를 배향하여 동지환구제를 거행하였으나, 『대한예전』에는 조상의 배위에 대한 의례 절차가 나와 있지 않다. 환구제에 있어서 조상 배향의 중요성, 그리고 명대에 호천상제에 대한 의례와 인조에 대한 배향 의례가 일관되게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예전』은 의주의 완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sup>24)</sup>

다시 장지연의 문제제기로 돌아가고자 한다. 주권 수호와 근대화가 절박한 시기에 황제국의 전례를 완정하게 구비하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했던 것인가? 선대의 왕들을 추존하고 환구단의 하늘 제사에 조상을 배향하는 것에 어떠한 의미와 공효가 있는가? 장지연은 「황례편」 제1과 「황례편」 제2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다. 이를 통해 장지연이 황제례를 어떠한 방식으로 고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3. 「황례편(皇禮篇)」에 나타난 교배(郊配)와 추존(追尊)의 의미

장지연의 「황례편」 제1은 ‘교배’, 즉 환구단에서의 제사에 조상을 함께 배향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황례편」 제2는 ‘추존’ 즉 선대 왕의 존호를 높이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두 글에서 모두 당면한 사안에 대한 경전적 근거를 『예기(禮記)』로부터 찾아내고 중국 역대의 사서(史書) 및 전례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반증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발췌하여 제시한 뒤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간다.

먼저 「황례편」 제1에서 장지연은 『예기』 「제법(祭法)」편의 “유우씨(有虞氏)는 체(禘)제사에 황제(黃帝)를 배향하고 교(郊)제사에 제곡(帝嚳)을 배향하였으며, 하후씨(夏后氏)는 교제사에 곤(鯀)을 배향하였으며, 은(殷)나라 사

24) 박재경, 「환구제 형성 과정의 예학적 함의」,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회, 2008, 335~338쪽; 임민혁에 따르면, 현재 장서각에 소장된 『대한예전』 유일본은 장지연 원성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임민혁, 「대한제국기 『대한예전』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 실학』 34, 역사실학회, 2007, 158쪽.

람들은 교제사에 명(冥)을 배향하였으며, 주(周)나라 사람들은 교제사에 후직(后稷)을 배향하였다.”는 구절과 『교특생(郊特牲)』편의 “만물은 하늘에 근본을 두고 있고 인간은 조상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것이 선조를 상제에게 배향하는 이유이다. 교의 제사는 근본에 보답하고 시원에 되돌아감의 큰 것이다.”는 구절을 인용한다.<sup>25)</sup> 전자를 통해 삼대의 제왕들이 도성 밖 교외에서 거행하는 제천 의례인 교제사에 반드시 선대의 왕이나 조상을 함께 배향하였음을 드러내고, 후자를 통해 교제사에 조상을 배향하는 것에 담긴 보본반시(報本反始)의 의미를 확인한다. 그리고 장지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각건대 천자의 예는 하늘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제왕의 효는 조상을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근본에 보답하고 시원에 되돌아감의 큰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에 제사함에 조상을 배향하는 것은 유우씨, 하후씨, 상, 주로부터 따라 숭상한 것입니다.<sup>26)</sup>

최고 통치자로서의 군주가 하늘에 제사지내고 여기에 자신의 조상을 함께 배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혈통을 신성화하여 정통성을 확립하고 현실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가? 단지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면, ‘근본에 보답하고 시원에 되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기』 『교특생』에서는 “만물은 하늘에 근본을 두고 있고 인간은 조상에 근본을 두고 있다.”라고 하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성찰을 진행한다. 즉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근본은 바로 ‘하늘’이다. 인간 역시 만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근원 역시 하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문적 가치의 측면에서 유가가 존재의 근원으로 삼

25) 『韋庵集卷之三』, 文稿卷之五 『皇禮篇』 第一(『張志淵全書』 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祭法』曰: “有虞氏禘黃帝而郊嚳, 夏后氏郊鯀, 殷人郊冥, 周人郊稷.” 『郊特牲』曰: “萬物本乎天, 人本乎祖, 此所以配上帝也. 郊之祭, 大報本反始也.”

26) 『韋庵集卷之三』, 文稿卷之五 『皇禮篇』 第一(『張志淵全書』 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蓋天子之禮, 莫重乎事天, 帝王之孝, 莫大乎尊祖, 故曰大報本反始也. 祀天而配祖, 自虞夏商周, 其所從來尙矣.

는 것은 ‘인륜’이다. 그것은 혈연 그 자체가 아니라 혈연을 통해 면면히 계승되는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 근원은 만물의 시원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를 있게끔 한 혈연의 연쇄를 거슬러 올라가 보았을 때 만나게 되는 최초의 어떤 인물이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러한 존재의 근원을 반추해 올라가서 성찰하고 감사를 표하는 행위이다. 제왕이 하늘에 제사하고 동시에 조상을 배향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반추와 성찰의 한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박례경에 따르면 환구제는 서주(西周)에서 춘추전국시기를 거쳐 진한 초기까지 형성된 제천 의례, 즉 교제사의 역사를 유학의 예학적 이념을 통해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선진시기 천신(天神)과 왕의 관계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천명을 준수하는 덕행을 통해 복을 기원하는 관계였던 데 비해, 진한 시기 천신과 황제의 관계는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직접적 교감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한 말엽부터 『예기』를 위시한 예경(禮經)의 내용을 전거로 교사(郊祀) 개혁이 추동됨에 따라, 교사 의례는 근본에 보답하고 시원에 회귀하는 ‘보본반사’의 유교적 이념을 통해 재정의된다. 더불어 조상을 하늘에 배향하는 형식을 정립함에 따라 혈연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유교의 근본 이념을 교사에서 체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혈연에 기초한 세속적 관계와 일상의 신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자연의 본원에 대한 회귀, 질박한 바탕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 동지환구제의 예학적 함의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는 제국의 지향점으로 제시되어 황제의 무한 권력을 제어함으로써 보장하는 하나의 방식을 이루어낸다.<sup>27)</sup>

이러한 분석대로라면, 제천 의례에 조상을 배향하는 것은 유가적 제천 의례로서 가장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왕에게 하늘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통해 모든 존재의 근원, 그리고 인간적 삶의 근원에 대한 반추와 성찰을 촉구하는 것은 그가 홀로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만물과 인간이 성립하고 번영해 온 역사의 끝에 그가 존재하고 있고 그의 혈연이 바로

27) 박례경, 「환구제 형성 과정의 예학적 함의」,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학회, 2008, 314~332쪽.

그 일을 무겁게 책임져 왔기 때문이며,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계승해야 할 임무가 있고 그것을 수행해 내는 것이 곧 제왕의 효(孝)임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환구제에 담긴 유가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지연은 황제의 조상에 대한 배향이 누락된 대한제국의 환구제에 대하여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대황제폐하께서는 조종의 누적된 공업을 받들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운을 받아 크게 대보(大寶)에 오르시어 앞선 공렬을 회복하심에 환구단을 환하게 건설하고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를 밝게 거행하셨으니, 배향의 법을 속히 행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일이 중대하여 허술하게 논의하여 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름이 없지만, 대개 예라는 것은 정교와 명령이 말미암는 근본이니, 그러므로 『예기』 『제통(祭統)』 편에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도(道) 가운데 예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는 하늘에 제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근본에 보답하고 시원에 되돌아가는 것으로 교화를 유지하는 큰 도입니다. 더구나 우리 열성조께서는 인덕이 깊고 은택이 두터워 살갓에 스미고 골수에 사무친 것이 오백여년이니, 국맥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진실로 예교의 교화에 말미암을 따름입니다.<sup>28)</sup>

즉 장지연은 ‘보본반시’라는 유가의 이념에 충실한 입장에서 대한제국의 전례를 다루고자 하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국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황제국을 선포하는 것은 근대적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황제국 의례 제정의 맥락에서 보면 장지연에게 대한제국은 중화문화를 계승한 유가적 제왕의 나라였다. 그야말로 삼대 성왕의 통치를 이상이자 전범으로 삼는 천자국으로 올라서기를 갈망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국가

28) 『韋庵集卷之三』, 文稿卷之五 『皇禮篇』 第一(『張志淵全書』 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我大皇帝陛下, 承祖宗積累之業, 膺邦命維新之運, 誕陞大寶, 克恢前烈, 煥設園丘, 昭舉祀天之禮, 則配享之典, 不容不亟行, 而顧其事體重大, 有難草草議舉, 故于茲靡遑, 然蓋禮也者, 政教命令之所由本也, 是故傳曰: “治人之道, 莫急於禮.” 禮莫重於祀天, 祀天者所以報本反始, 而維持教化之大道也. 況我列聖祖, 深仁厚澤, 淪肌浹髓, 五百有餘載, 而維持國脈者, 無他道焉, 亶由於禮教之化而已.

전례는 바로 천자국 예제의 수준과 규모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황례편」 제2에서 이러한 입장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환구제에 조상을 배향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선대 왕의 존호를 높이는 추존의 문제와 결부된다. 누구를 배향할지, 그리고 어떠한 칭호로 배향할지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지연은 「황례편」 제2에서 『예기』 「대전(大傳)」편의 “무왕이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변두를 들고서 분주히 서둘러 왕호를 추증하여 단보(檀父)를 태왕(太王)으로, 계력(季歷)을 왕계(王季)로, 창(昌)을 문왕(文王)으로 높였는데, 선조가 제후의 낮은 칭호로 천자의 존귀한 지위를 대하지 않게 한 것이다.”는 구절을 인용하여 나라를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조상의 칭호를 높이는 전거로 제시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호(陳澹)의 『예기집설』에서 “선공(先公)에게 천자의 칭호를 추가한 것은 대개 제후의 낮은 칭호로 천자의 존엄함에 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왕호를 추증하는 예는 무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대개 주나라의 선공들은 상나라의 제후였기 때문입니다. 후직으로부터 무왕까지 모두 16세인데 처음으로 천하에 왕이 되었으므로 무왕은 목야에서 거를이 없을 때를 당하여 병기와 갑옷을 풀어놓지도 않았는데 분주히 서둘러 속히 왕호를 추증하는 예를 행하였으니, 이는 실로 성인이 아버지를 높이는 의리를 시급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자가 말하기를 “대효(大孝)는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성인의 효에 어찌 아버지를 높이는 것에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천하의 지극한 정을 극진히 하고 천하의 지극한 문(文)을 갖추는 것이며 만세 제왕가의 바꿀 수 없는 떳떳한 법입니다.<sup>29)</sup>

29) 『韋庵集卷之三』, 文稿卷之五 「皇禮篇」 第二(『張志淵全書』 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禮記」 「大傳」曰: “武王率天下諸侯執籩豆, 駿奔走, 追王太王·王季·文王, 不以卑臨尊也.” 臣按, 陳澹「集註」曰: “追加先公以天子之號者, 蓋爲不可諸侯之卑號臨天子之尊也.” 臣以爲追王之禮, 自武王始, 蓋周之先公, 商之諸侯也. 自后稷至武王, 凡十六世, 始王天下, 故武王當牧野蒼黃之際, 金革未解, 駿奔走, 疾行追王之禮, 此實聖人急於尊親之義也. 是以曾子曰: “大孝尊親.” 聖人之孝, 豈有加於尊親之禮乎? 此所謂極天下之至情, 備天下之至文, 而爲萬世帝王家不易之常典也.

주나라의 무왕은 천자의 자리에 오른 뒤 곧바로 증조부 고공단보, 조부 계력, 부친인 창에게 각각 태왕, 왕계, 문왕이라는 왕호를 올렸다. 자신이 천자가 된 이상 그들을 제후의 칭호로 대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지연은 여기에서 무왕이 개국으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추존을 시급히 한 것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당서(唐書)』, 『송사(宋史)』, 『대명집례』 등에서 당 고조가 무덕(武德) 원년에 부친을 세조(世祖) 원황제(元皇帝)로, 조부를 태조(太祖) 경황제(景皇帝)로 추존한 사실, 송 태조가 건륭(建隆) 원년에 고조부를 희조(僖祖) 문헌황제(文獻皇帝)로, 증조부를 순조(順祖) 혜원황제(惠元皇帝)로, 조부를 익조(翼祖) 간공황제(簡恭皇帝)로, 부친을 선조(宣祖) 소무황제(昭武皇帝)로 추존한 사실, 그리고 명 태조가 홍무(洪武) 원년에 고조부 이하 4세에 대하여 덕조(德祖), 의조(懿祖), 희조(僖祖), 인조(仁祖)로 추존한 사실을 인용하여 이들 모두가 천자에 즉위한 바로 그 해에 선대 조상의 칭호를 추승하였음을 밝힌다. 이는 대한제국 선포 이후 3년째가 될 때까지 고종이 선대 왕들에 대한 추존의 예를 거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논거들이다.

신이 살펴보건대, 삼가 역대의 사승(史乘)을 상고해보면 무릇 제왕이 흥할 때에 추존하는 전례는 모두 즉위한 원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아 혹은 전쟁으로 소란스러운 때이거나 혹은 왕업이 초창하는 처음이었기에 어려움이 오만가지여서 갑자기 거행하기 어려울 듯하였는데도 오히려 분주히 서둘러 속히 거행한 것은 어찌서이겠습니까? 진실로 예는 아버지를 높이는 큰 의리보다 긴급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황상폐하께서는 지인(至仁) 대효(大孝)의 성군으로서 지금까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겨를이 없으니 신은 실로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sup>30)</sup>

30) 『韋庵集卷之三』, 文稿卷之五 『皇禮篇』 第二(『張志淵全書』 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臣按, 謹稽歷代史乘, 凡帝王之興, 其追尊之典, 皆不踰卽眞之元年, 其天下猶未平定, 或在干戈擾攘之際, 或在王業草創之始, 其艱虞萬狀, 似難卒舉, 而猶且駿奔而疾行者何也? 誠以禮莫急於尊親之大義也. 今我皇上陛下, 以至仁大孝之聖, 迄今數載, 未之遑焉, 臣實未知聖意之攸在也.



왕이 선대의 조상을 추송하는 것은 군주로서의 권위를 높이고 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sup>31)</sup> 그러나 조종 추송 자체의 논리와 맥락을 좀더 들여다보면, 제왕의 효는 다름 아니라 조상을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두지 않고, 그 이름을 높여 부르고 그에 걸맞게 대우하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만을 지고의 위치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제왕 통치에서 늦출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추존이라는 예에 담긴 유가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지연은 바로 이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후국의 왕에서 천자국의 황제로 올라선 고종은 제후국의 왕이었던 선대의 왕들 가운데 누구를 황제의 이름으로 높여야 하는가? 조상을 높이는 것이 왕 된 이의 가장 지극한 효라면, 앞선 모든 왕들을 추존하고, 태조 이상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추존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장지연은 ‘천자7묘’의 묘제(廟制)를 끌어들이며 용쇄의 한계를 정한다. 다만 고례에는 ‘천자7묘’의 제도에서 ‘7’이라는 수를 구성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시조와 고조부의 조부, 고조부의 부친,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친 등 3소(昭) 3목(穆)을 합하여 7묘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조와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친 등 2소 2목, 그리고 문왕, 무왕과도 같이 공덕이 있어서 체천하지 않는 이조(二祧)를 합하여 7묘를 구성하는 것이다. 장지연은 전자가 논리적으로 더 합당하고 보면서도, 사실 두 설 모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어리석은 신이 저으기 생각하기에 우리 황상 폐하의 성스러운 효성은 먼 조상을 추존하는 정성에 부족함이 없으시니 응당 태묘의 여러실에 대하여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높이고 감히는 구별에 한계가 없을 수 없으므로 추송하는 전례를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친 4세만 거행하는 것은 형세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나라에는 삼종(三宗)이 있었으니 태종(太宗), 중종(中宗), 고종(高宗)이

31)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추송사업과 황제권의 강화의 사상적 기초」, 『한국근현대사연구』 1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87~98쪽.

있고 주나라에는 이조(二祧)가 있었으니 문왕, 무왕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대왕께서는 임진년, 계사년의 난리를 만나 혼란한 가운데에서 나라의 위세를 떨치고 큰 반석 위에서 종묘 제례를 거행하여 우리의 무강한 역복(歷服)을 드리웠으니 온 나라의 백성 중에 누가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해 준 은택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조대왕께서는 난세를 다스려 올바른을 회복하고 위기를 되돌려 안정에 두었으니 덕화와 공적이 영원무궁한데 병자년, 정축년 이후 종묘사직과 백성을 위한 계획으로 분함을 삼키고 욕됨을 참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항상 폐하께서 선왕들의 계획을 크게 드러내시고 계지술사(繼志述事)의 사업을 넓혀서 가장 중요하고 공경스러운 예를 크게 거행하시니, 이 전례의 날에 옛 예정의 칠묘의 문장과 은나라, 주나라의 사례에 의거하여 우리 선조대왕, 인조대왕께서 중흥시킨 공력의 성대함으로써 함께 추존하는 예를 올려 칠묘의 문장에 부합하게 한다면 예에 있어서도 상고함이 있고 정에 있어서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옆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깊이 신의 뜻을 헤아려주십시오.<sup>32)</sup>

즉 장지연은 태조와 고종의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친 등 2소 2목, 그리고 이조(二祧)를 합하여 ‘천자7묘’를 구성하는 방식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그가 은나라의 태종, 중종, 고종 등 삼종 혹은 주나라의 문왕, 무왕 등 이조(二祧)와 같이 공덕이 있어서 체천하지 않는 선왕으로서 선조와 인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선조와 인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당하여 전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흥의 기틀을 다진 임금들로서, 당시와도 같이 외세의 압력이 밀어닥치는 난세에 충분히 귀감이 된다고 여긴 것이다.

32) 『韋庵集卷之三』, 文稿卷之五 『皇禮篇』 第二(『張志淵全書』 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臣愚竊以爲, 我皇上陛下, 聖孝不置於追遠尊祖之誠, 宜無有間於太廟諸室, 而隆殺之別, 不能無限, 則追崇之典, 只舉於高曾祖禰四世, 勢不得不爾, 然殷有三宗曰, 太宗·中宗·高宗是已, 周有二祧, 文王·武王是也. 惟我宣祖大王, 值龍蛇之煽亂, 振國勢於搶攘, 奠宗祊於磐泰, 以垂我無疆歷服, 凡環東含生, 孰不被再生之澤哉? 惟我仁祖大王, 撥亂反正, 轉危措安, 德化功烈, 永垂無窮, 而自丙丁之後, 爲宗祀生靈之計, 含憤忍恥, 垂至今日, 何幸我皇上陛下, 丕顯祖宗之謨, 克恢繼述之業, 誕舉莫重莫敬之禮, 當此典禮之日, 做古禮經七廟之文, 與殷周之例, 以我宣祖·仁祖兩大王中興功烈之盛, 并上追尊之禮, 以配七廟之文, 則於禮有稽, 於情無憾矣. 伏願皇上, 淵然深燭焉.

고종이 「황례편」을 실제로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sup>33)</sup> 다만 고종은 1899년 9월 장헌세자, 즉 사도세자를 장종(莊宗)으로 추숭함으로써 장종, 정조, 순조, 익종을 4대조로 삼고, 12월 7일 태조, 장종, 정조, 순조, 익종을 각각 태조(太祖) 고향제(高皇帝), 장조(莊祖) 의향제(懿皇帝), 정조(正祖) 선황제(宣皇帝), 순조(純祖) 숙황제(肅皇帝), 문조(文祖) 익황제(翼皇帝)로 추존한다.<sup>34)</sup> 그리고 12월 22일 환구단의 배천대제 겸 동지대제에서 태조를 배향한다.<sup>35)</sup> 즉 장지연이 제안한바 태조와 2소 2목, 그리고 이조(二祧)로 이루어진 ‘천자7묘’의 구상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태조와 4대조가 황제의 칭호를 얻게 되었고, 동지의 환구단 제사에서 태조가 배향되었다.

20세기를 그야말로 목전에 두었던 대한제국에서 이러한 전례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봉규는 조선왕조의 예학적 지향에서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로, 군주에 대한 의례를 유교 이념에 부합하는 예제로 규정해냄으로써 군주에 대하여 그 개인의 자연인적 성격을 축소시키고 유교적 관념의 수행자로 성문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제가 개보된 것을 들고 있다. 이는 국왕을 최고권력자로 절대화하거나, 또는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초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방향이 아닌, 유교적 관념을 숭선수범하는 수행자로서 객관화하고 국왕 개인의 사적 의지를 억제시키는 방향이라는 것이다.<sup>36)</sup>

공교롭게도 1899년 대한제국 법규교정소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여 고종에 대해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는 황제로서 군대통수권, 법률제정권, 행정권, 관료임명권, 외교권 등 대한제국의 통치권 일체를 행사하는 절대군주로 규정하고 대한제국의 전제군주권을 합법화하였다.<sup>37)</sup> 바로 이 무렵에 장지연

33) 김문석에 따르면 장지연은 「황례편」을 작성해 올리려다가 중단했다. 선대 왕들을 황제로 추존하는 것에 관한 조정의 논의가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문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35, 문헌과해석사, 2006, 126쪽.

34) 『高宗實錄』 권39, 36년 12월 7일 양력 4번째 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35) 『高宗實錄』 권39, 36년 12월 22일 양력 1번째 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36) 이봉규, 「상례 쟁점을 통해 본 『국조상례보편』의 지향-「고금상례이동」의」와 「국조상례보편」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36, 한국동양철학회, 2011, 111~112쪽.

37) 왕현중,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 논리」, 『역사학보』 208, 역사학회, 2010, 16쪽.

은 황제례의 미비함에 문제제기하며 교배와 추존의 예를 거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경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여 제시하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가의 이념으로 의미부여한 것이다. 이는 황실의 권위를 높여 전제정치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논의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국왕을 유교적 관념의 수행자로 규정함으로써 통치권의 절대화를 억제하려 한 조선시대 예치의 지향이 표출된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후인들이 ‘전통적인 유학자’에서 ‘개화 사상가’로 전향하던 시기라고 평가하는 무렵, 장지연은 한편으로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함과 더불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황제례에 관한 논의를 통해 대한제국이 이 지역에 면면히 계승되어 온 유가 이념을 온전히 담지한 ‘천자국’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유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신구학 절충의 형태로 근대화를 달성하자’<sup>38)</sup>고 한, ‘급진개화파도 아니요 위정척사파도 아닌 동도서기 계열의’<sup>39)</sup> 이른바 ‘개신유학자’로 일컬어지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졌던 또다른 모습이다.

#### 4. 맺음말

장지연은 대한제국 수립과 황제국 의례 정비의 과정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대한제국이 선포되기에 앞서 고종이 황제의 지위에 오를 것을 요청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국가전례 정비 기구인 사례소의 일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불과 1년 4개월만에 사례소가 폐지되자 황제국 의례인 『대한예전』 편찬 작업을 완료하여 고종에게 올렸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9년, 환구단에서의 제사에 조상을 함께 배향하는 ‘교배’와 선대 왕의 존

38) 김도형, 「장지연의 변법론과 그 변화」,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2000, 80쪽.

39) 한영우, 「대한제국 성립과정과 『대례의례』」,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1, 206쪽.

호를 높이는 ‘추존’이 행해지지 않음을 들어 황제국으로서의 의례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황례편」 제1과 「황례편」 제2를 작성한다.

「황례편」 제1에서 장지연은 『예기』를 인용하여 교제사에 조상을 배향하는 것에 담긴 ‘보본반사’의 의미를 확인한다. 즉 제왕이 하늘에 제사하고 더불어 조상을 배향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반추와 성찰의 한 극치로서, 유가의 이념이 반영된 제천 의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장지연은 황제의 조상에 대한 배향이 누락된 대한제국의 환구제에 문제제기하며, 제왕이 존재의 근원, 그리고 인간적 가치의 근원에 대한 반추와 성찰을 통해 자신이 만물과 인간이 성립하고 번영해 온 역사의 끝에 존재하고 있고 그의 혈연이 그 일을 무겁게 책임져 왔으며,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계승해야 할 임무가 있음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황례편」 제2에서 장지연은 주나라의 무왕을 비롯하여 역대의 제왕들이 천자의 자리에 오른 즉시 조상의 칭호를 추송하였음을 밝히며 대한제국 선포 이후 3년째가 될 때까지 고종이 선대 왕들을 황제로 추존하는 예를 거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다. 제왕의 호는 다름 아니라 조상의 이름을 높여 부르고 그에 걸맞게 대우함으로써 오로지 자신만을 지고의 위치에 두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추존이라는 예에 담긴 유가적 이념이다. 그렇다면 고종은 선대의 왕들 가운데 누구를 추존해야 하는가? 장지연은 이에 대해 ‘천자7묘’의 묘제(廟制)를 끌어들이어 융궐의 한계를 정하고, 태조와 고종의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친 등 2소 2목, 그리고 이조(二祧)를 합하여 ‘천자7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장지연은 유가의 이념에 충실한 입장에서 대한제국의 전례를 다루었다. 황제국 의례 제정의 맥락에서 보면 그에게 대한제국은 유가적 제왕의 나라였기에, 대한제국의 국가전례는 바로 천자국 예제의 수준과 규모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즉 장지연은 대한제국이 황제국 의례를 통해 삼대 성왕의 통치를 계승하고 유가 이념을 온전히 담지한 천자국으로 올라서기를 갈망한 것이다. 이는 국왕을 유교적 관념의 수행자로 규정함으로써 통치권의 절대화를 억제하려 한 조선시대 예치의 지향이 표출된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후인들이 ‘전통적인 유학자’에서 ‘개화 사상가’로 전향하던 시기라고 평가하는 무렵, 역시 후인들이 ‘그의 사상의 근간은 유학’이라고 평가하는 장지연이 보인 또 하나의 면모이다.

## ■ 참고문헌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張志淵全書』 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위암 장지연선생 기념사업회,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김도형, 「장지연의 변법론과 그 변화」,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2000.

김문식, 「고종의 황제 등극의에 나타난 상징적 함의」, 『조선시대사학회』 37, 조선시대사학회, 2006.

\_\_\_\_\_,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35, 문헌과해석사, 2006.

노관범, 「청년기 장지연의 학문 배경과 박학풍」, 『조선시대사학회』 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_\_\_\_\_, 「대한제국기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4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박례경, 「환구제 형성 과정의 예측적 함의」,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학회, 2008.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추송사업과 황제권의 강화의 사상적 기초」, 『한국근현대사연구』 1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왕현중,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 논리」, 『역사학보』 208, 역사학회, 2010.

이민원, 「대한제국의 탄생 과정과 위암 장지연-칭제건원 논쟁을 중심으로」, 『문명연지』 20, 한국문명학회, 2019.

이봉규, 「상례 쟁점을 통해 본 『국조상례보편』의 지향-「고금상례이동의」와 『국조상례보편』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36, 한국동양철학회, 2011.

이 욱, 「대한제국기 환구제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30, 한국종교학회, 2003.

임민혁, 「대한제국기 『대한예전』의 편찬과 황제국 의례」, 『역사와 실학』 34, 역사실학회, 2007.

임종진, 「위암 장지연의 유교관에 대한 검토-퇴계학맥의 근대적 변용에 관한 일고찰」, 『철학연구』 91, 대한철학회, 2004.

한영우, 「대한제국 성립과정과 『대례의례』」,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1.

## Jang Ji-yeon's idea about the rituals of the emperor of the Daehan Empire in *Hwanglyepyeon*

Chung, Hyun-jung\*

Jang Ji-yeon was one of those who appealed Kojong's elevation from king to emperor. And as an official of Saryeso, he published *Daehan-yejeon*, the book regarding national rituals. In 1899, on the third year since the declaration of the Daehan Empire, Jang Ji-yeon wrote *Hwanglyepyeon* and criticized the emperor for not performing worship rituals for the heaven and ancestors together and not honoring ancestors as emperors. According to the *Hwanglyepyeon*, performing worship rituals for the heaven and ancestors together means returning to and repaying the origin of all existence and human life, therefore emperor reflect on his duty through performing the ritual. In addition, the ancient emperors honored their ancestors as emperors as soon as they ascended the throne, and did not put only themselves on the supreme position. Jang Ji-yeon urged Kojong should perform worship rituals for the heaven and ancestors together in the Sacrifice to Heaven at the Round Altar, and should honor his ancestors as emperors according to Emperor's Seven Chambers System. He desired the Confucian ideology to be reflected in the rituals of the emperor of the Daehan Empire.

**Key words** : the Daehan Empire, *Daehan-yejeon*, *Hwanglyepyeon*, the Sacrifice to Heaven at the Round Altar, Emperor's Seven Chambers System

논문투고일 : 2021년 10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1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23일

\*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 / Research Professor